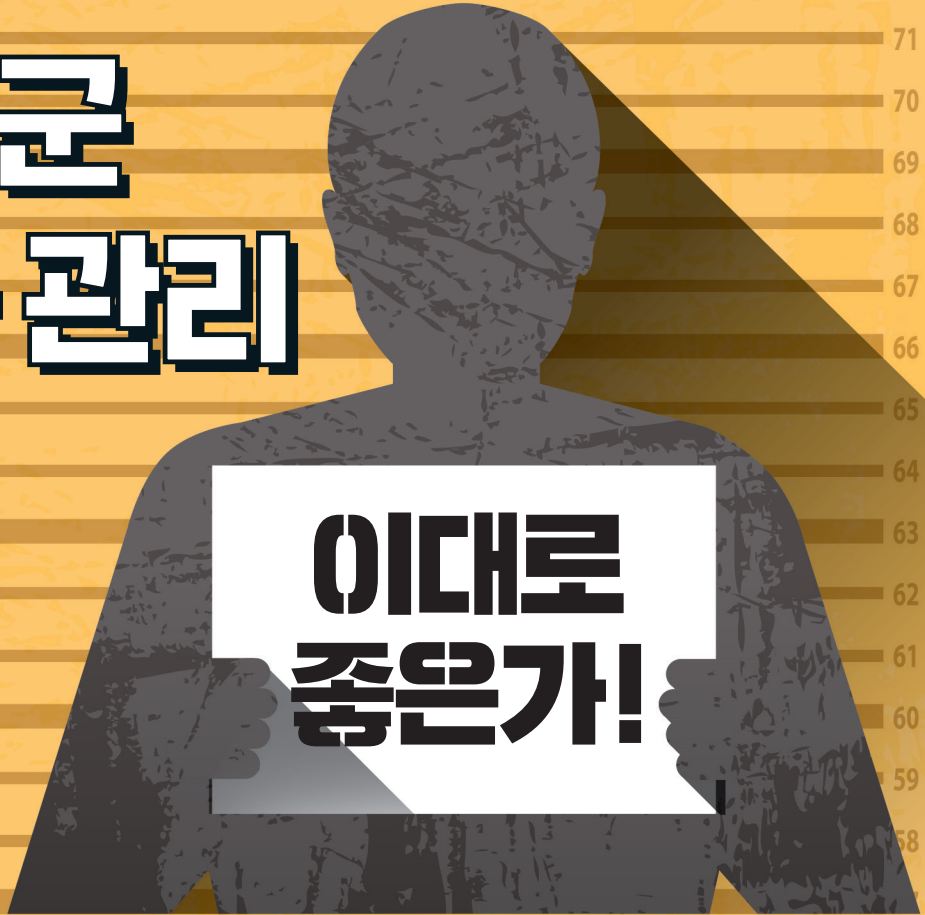


2021년 제60회 한국교정학회·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2021. 11. 25.(목) 14:30~18:30

 ZOOM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진행

시 간	내 용	
14:00 ~ 14:20	참가자 ZOOM 회의실 참석	
14:30 ~ 14:50 (총 20분)	식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응렬/한국교정학회장 - 유병철/법무부 교정본부장 ○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태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주민/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4:50 ~ 17:10 (총 140분)		주제 발표 및 토론
17:10 ~ 18:30 (총 80분)	마무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장 최응렬입니다.

먼저, 우리 학회와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0회 학술대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은 조심스러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고위험군 출소자인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목적은 학자와 교정실무자들의 소통을 통해 수용자 재범 예측을 위한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언론보도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해 논의하여 교정시설 수용 시부터 출소 후 사회 적응 시까지 효율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자감독 제도는 교정행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전자감독 제도와 교정시설의 과밀화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교정시설의 과밀해소를 중심으로 가석방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교정학회는 매해 화제가 되는 교정 분야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교정행정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 또한, 참가자 모두가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사회자·발표자·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학회 회원 및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교정학회장 **최 응 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 회원 여러분!

법무부 교정본부장 유병철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우리의 일상생활을 여러모로 제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언론과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던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소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한편, 수용기간 중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교정정책 및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 전문가와 실무행정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기회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예방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직업훈련, 인성교육, 작업, 취업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과학적인 진단과 처우를 통한 재범위험성 관리를 바라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개별 수형자의 재범유발요인에 기초한 집중 처우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교정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한 처우계획을 수립, 수용생활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석방 신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방화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는 지방교정청별로 설치된 분류센터에 이송하여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센터의 위험관리평가는 교정시설에서의 수용관리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의 개입 수준 판단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정본부는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한 치료 및 처우개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마약류사범 이수명령 집행프로그램 개편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처우프로그램의 운영에도 교정행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고위험군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향후 정책의 개발과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정본부의 재범고위험군 수용자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5일

법무부 교정본부장 유 병 철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2021년 한국교정학회, 법무부 교정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60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의와 연구, 업무수행으로 바쁘실 텐데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응렬 한국 교정학회 회장님과 유병철 법무부 교정보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축사를 해주시는 박주민 국회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동학술대회의 대주제인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이대로 좋은가?’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 주제입니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의 재범이 사회불안을 야기하면서,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와 수형자 개별처우의 바탕이 되는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 방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석방 전자감독에 관한 비판적 검토’에 관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교정 정책적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6대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학회, 정부 부처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및 교정정책을 포함한 선진적인 국가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법무정책 분야로 연구영역을 확장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로 도약하는 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 태 훈**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시는 최응렬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교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0년에 창설된 한국교정학회는 그동안 교정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살피고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 교정행정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교정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교정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제60회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는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논의되었던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동기없는 범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이들의 재범방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등 특별한 처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도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범죄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오늘 이 자리가 재범 고위험군 수행자 관리에 대한 창의적인 토론의 장이 되고, 교정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의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제시된 견 견에 귀 기울여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정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본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최응렬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박 주 민

 개회사 한국교정학회장 회장 최응렬	iv
 개회사 법무부 교정본부장 유병철	vi
 환영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하태훈	viii
 축사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x
 제1주제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 방안 - 수용자 재범예측을 중심으로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심혜인/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 론 : 조영오/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고재익/법무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제2주제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중심으로 -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부록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현장 및 연구윤리규정	59

2021년 제60회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제1주제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 방안

- 수용자 재범예측을 중심으로 -

- 발 표 : 심혜인/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토 론 : 조영오/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고재익/법무부 분류심사과 교정관

분류지표 타당성 제고방안

- 수용자 재범예측을 중심으로 -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수형자 분류 요인 |
| II. 수용자 현황 | V. 결론 |
| III.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 |

I 서론

교정시설의 과밀현상과 출소 후 수형자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 및 교화 효과에 대해서는 ‘Noting Working’이라는 무용론 평가(Martinson, 1974)와 근거-기반 교정(Evidence-Base Correction)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재범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Something Works’의 유용론 평가(Cullen & Gilbert, 1982; Greenwood & Zimring, 1985)로 상반되게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조운오 외(2011)의 연구에서 교정기관의 교정처우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에서 단순 교도작업의 참여보다는 작업장려금을 받는 실질적인 교도작업이 수용자 출소 후 재범률 감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65세 이상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정책, 교도작업, 의료서비스, 외부접견 등의 수용처우가 재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혜인, 2021).

이와 같은 교정시설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집중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과 수용처우가 수용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김명철 외, 2015; 민원홍·원일, 2017; 조윤오 외, 2011; 조윤오, 2012a; 조윤오, 2012b, 홍송이 외, 2018). 집중인성교육을 전면 실시한 이후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교육이 개발되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맞춰 화상접견을 활성화하는 등 수용처우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 개선되고 발전된 수용처우의 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교정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처우와 수용자 재범 및 재사회화 영향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가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범죄 동향에는 교통범죄보다 지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큰 변화가 생겼다(경찰청, 2021). 또한,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정시설의 노인 범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교정본부, 2020).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개별처우를 통한 수용자의 재범 억제 및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를 비롯하여 개별적인 교정처우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용자의 분류는 수용시설에서 범죄성에 대한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개별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도입단계이다. 그러므로 재범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해서 이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지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의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개별처우를 위하여 개발된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수용자 현황

1. 교정시설 수용현황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통하여 정원대비 수용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다. 2014년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5만 명이 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로 110.0% 이상의 초과 수용 비율을 보이며, 2016년에 평균 수용비

율이 121.2%로 가장 큰 비율로 초과 수용이 되었으며, 그해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정원대비 수용인원이 높은 과밀수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표 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비율(2011년~2020년)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용정원	45,690 (100.0)	45,690 (100.0)	45,690 (100.0)	46,430 (100.0)	46,600 (100.0)	46,600 (100.0)	47,820 (100.0)	47,820 (100.0)	47,990 (100.0)	48,600 (100.0)
1일 평균 수용인원	45,845 (100.3)	45,488 (99.6)	47,924 (104.9)	50,128 (108.0)	53,892 (115.6)	56,495 (121.2)	57,298 (119.8)	54,744 (114.5)	54,624 (113.8)	53,873 (110.8)

수용내용별 수용자 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지난 10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약 60.0%를 차지하고 있는 수형자는 2018년 이후부터는 소폭 감소 추이를 보이며, 10년 전보다 비율은 감소하였다. 반면, 미결수용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수용 인원대비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2016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8년에 7.6%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노역장 유치 수용자는 지난 10년간 수용자 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였다.

〈표 2〉 수용내용별 수용자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연도	1일 평균 수용인원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	
2011	45,845 (100.0)	-	29,820 (65.0)	-	14,201 (31.0)	-	1,824 (4.0)	-
2012	45,488 (100.0)	▽0.8%	29,448 (64.7)	▽1.3%	14,186 (31.2)	▽0.1%	1,854 (4.1)	▲1.6%
2013	47,924 (100.0)	▲5.1%	30,181 (63.0)	▲2.4%	15,646 (32.6)	▲9.3%	2,097 (4.4)	▲11.6%
2014	50,128 (100.0)	▲4.4%	30,727 (61.3)	▲1.8%	17,377 (34.7)	▲10.0%	2,024 (4.0)	▽3.6%
2015	53,892 (100.0)	▲7.0%	32,649 (60.6)	▲5.9%	19,267 (35.8)	▲9.8%	1,976 (3.7)	▽2.4%
2016	56,495 (100.0)	▲4.6%	33,791 (59.8)	▲3.4%	20,877 (37.0)	▲7.7%	1,827 (3.2)	▽8.2%
2017	57,298 (100.0)	▲1.4%	35,382 (61.8)	▲4.5%	20,292 (35.4)	▽2.9%	1,624 (2.8)	▽12.5%
2018	54,744	▽4.7%	34,377	▽2.9%	18,867	▽7.6%	1,500	▽8.3%

연도	1일 평균 수용인원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	
	(100.0)		(62.8)		(34.5)		(2.7)	
2019	54,624 (100.0)	▽0.2%	33,813 (61.9)	▽1.7%	19,343 (35.4)	▲2.5%	1,468 (2.7)	▽2.2%
2020	53,873 (100.0)	▽1.4%	33,392 (62.0)	▽1.3%	19,084 (35.4)	▽1.4%	1,397 (2.6)	▽5.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형명 및 형기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징역형이 약 9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4.0% 무기형, 0.2% 금고와 사형 수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고 수형자의 비율은 증가하였고, 무기 수형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징역형 수형자 중 형기별 분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수형자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수형자, 1년 미만 수형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년 미만 수형자와 3년 이상 수형자의 비율은 감소했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 수형자의 비율은 약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형자 형명·형기별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원	31,198 (100.0)	31,434 (100.0)	32,137 (100.0)	33,444 (100.0)	35,098 (100.0)	36,479 (100.0)	36,167 (100.0)	35,271 (100.0)	34,697 (100.0)	34,749 (100.0)
징역형	소계	29,831 (95.6)	30,024 (95.5)	30,738 (95.6)	32,006 (95.7)	33,637 (95.8)	34,991 (95.9)	34,679 (95.9)	33,790 (95.8)	33,232 (95.8)
	1년 미만	5,421 (17.4)	5,322 (16.9)	5,078 (15.8)	5,312 (15.9)	5,724 (16.3)	6,362 (17.4)	6,050 (16.7)	6,173 (17.5)	5,599 (16.1)
	3년 미만	9,666 (31.0)	9,829 (31.3)	10,344 (32.2)	10,898 (32.6)	12,001 (34.2)	13,010 (35.7)	13,208 (36.5)	13,208 (35.7)	12,587 (36.9)
	3년 이상	(14,744) (47.3)	(14,873) (47.3)	(15,316) (47.7)	(15,796) (47.2)	(15,912) (45.3)	(15,619) (42.8)	(15,421) (42.6)	(15,030) (42.6)	(14,814) (42.7)
금고	45 (0.1)	84 (0.3)	53 (0.2)	60 (0.2)	67 (0.2)	86 (0.2)	73 (0.2)	81 (0.2)	66 (0.2)	86 (0.2)
무기	1264 (4.1)	1289 (4.0)	1288 (4.0)	1320 (3.9)	1337 (3.8)	1345 (3.7)	1358 (3.8)	1343 (3.8)	1343 (3.9)	1320 (3.8)
사형	58 (0.2)	58 (0.2)	58 (0.2)	58 (0.2)	57 (0.2)	57 (0.2)	57 (0.2)	57 (0.2)	56 (0.2)	56 (0.2)

수형자의 연도별 출소 사유에 따른 인원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형기 종료 출소 인원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1년보다 2020년에는 그 비율이 8.2%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의 비율은 2020년에 15.3%로 10년 전보다 2.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면의 경우에는 2019년에 561명으로 1.0%를 차지하는 비율로 가장 많았으나 2011년과 2018년에는 사면 인원은 0명이었다.

<표 4>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형기 종료	16,551 (29.9)	15,742 (29.6)	16,374 (30.2)	17,191 (31.7)	19,187 (31.8)	21,357 (33.9)	23,324 (37.1)	21,821 (37.3)	21,092 (37.1)	19,736 (38.1)
가석방	7,129 (12.9)	6,500 (12.2)	6,201 (11.4)	5,394 (10.0)	5,507 (9.1)	7,157 (11.4)	8,275 (13.2)	8,693 (14.9)	8,174 (14.4)	7,903 (15.3)
사면	-	374 (0.7)	13 (0.0)	282 (0.5)	559 (0.9)	479 (0.8)	309 (0.5)	-	561 (1.0)	206 (0.4)
노역 종료	14,389 (26.0)	13,729 (25.8)	14,208 (26.2)	15,163 (28.0)	19,234 (31.8)	19,802 (31.4)	18,352 (29.2)	16,847 (28.8)	16,896 (29.7)	15,375 (29.7)
기타	17,367 (31.3)	16,857 (31.7)	17,501 (32.2)	16,173 (29.8)	15,927 (26.4)	14,184 (22.5)	12,559 (20.0)	11,089 (19.0)	10,177 (17.9)	8,597 (16.6)
총원	55,436 (100.0)	53,202 (100.0)	54,297 (100.0)	54,203 (100.0)	60,414 (100.0)	62,979 (100.0)	62,819 (100.0)	58,450 (100.0)	56,900 (100.0)	51,817 (100.0)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현황은 지난 10년간 과밀수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형을 종료하여 출소하는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가석방 및 사면 인원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인원수는 누적되고 있다.

2. 출소자 재범역 현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자가 형기종료, 가석방, 기타(감호종료, 가출소, 사면)의 사유로 출소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3년 이내에 다시 형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재수용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이내에 재범역한 출소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종료 출소 후 재

복역률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석방 출소 후 재복역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일정부분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출소사유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소인원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24,356	27,917	
재복역	총원	5,396 (22.3)	5,737 (22.2)	5,699 (22.2)	5,547 (22.1)	4,936 (21.4)	5,465 (24.8)	5,471 (24.7)	5,780 (25.7)	6,486 (28.6)	7,039 (25.2)
	형기종료	4,645 (29.0)	4,699 (27.9%)	4,714 (28.0)	4,895 (28.9)	4,470 (28.1)	4,958 (32.7)	5,058 (31.8)	5,389 (32.1)	6,024 (33.0)	6,495 (32.1)
	가석방	713 (8.8)	977 (11.6)	946 (11.5)	651 (8.1)	458 (6.4)	482 (7.4)	406 (6.5)	363 (6.7)	404 (7.3)	489 (6.8)
	기타	38 (44.7)	61 (11.3)	39 (6.1)	1 (3.6)	8 (38.1)	25 (7.2)	8 (25.8)	28 (9.6)	58 (10.0)	55 (10.4)

출소 후 재복역한 수형자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6월 미만의 재복역 수용자는 2011년 출소하여 2015년에 재복역한 수용자부터 급격히 비율이 감소하여 유지하고 있다. 반면, 1년 초과 재복역 수용자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복역 수용자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표 6〉 형기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소인원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24,356	27,917	
재복역	총원	5,396 (22.3)	5,737 (22.2)	5,699 (22.2)	5,547 (22.1)	4,936 (21.4)	5,465 (24.8)	5,471 (24.7)	5,780 (25.7)	6,486 (28.6)	7,039 (25.2)
	6월 미만	223 (19.9)	273 (19.4)	316 (19.7)	258 (20.9)	223 (19.5)	198 (20.8)	168 (20.2)	221 (25.1)	249 (27.6)	248 (26.1)
	1년 미만	1,828 (21.8)	1,958 (21.1)	1,915 (20.1)	1,765 (21.2)	1,471 (20.8)	1,554 (23.9)	1,674 (24.3)	1,639 (24.8)	1,957 (26.6)	2,136 (24.9)
	1년 이상	3,345	3,506	3,468	3,524	3,242	3,713	3,629	3,920	4,280	4,655

성별에 따른 수형자의 출소 후 재복역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성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10년 동안 증가하였으나, 여성 출소자는 재복역률이 2016년과 2018년에 상대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소인원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24,356	27,917	
재복역	총원	5,396 (22.3)	5,737 (22.2)	5,699 (22.2)	5,547 (22.1)	4,936 (21.4)	5,465 (24.8)	5,471 (24.7)	5,780 (25.7)	6,486 (28.6)	7,039 (25.2)
	남성	5,215 (23.1)	5,558 (23.1)	5,526 (23.0)	5,373 (23.0)	4,777 (22.1)	5,271 (25.6)	5,323 (25.8)	5,580 (26.7)	6,284 (27.8)	6,829 (26.4)
	여성	181 (11.7)	179 (10.5)	173 (10.2)	174 (10.3)	159 (10.8)	194 (13.2)	148 (10.2)	200 (12.8)	202 (11.6)	210 (10.4)

연령별 출소 후 재복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20세 미만의 재복역률 비율이 가장 높으며,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의 재복역률 비율은 2011년에는 16.9%에서 2020년 24.1%로 7.2%의 폭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60대가 6.0%, 40대 5.1%의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2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재복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다.

<표 8>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소인원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24,356	27,917	
재복역	총원	5,396 (22.3)	5,737 (22.2)	5,699 (22.2)	5,547 (22.1)	4,936 (21.4)	5,465 (24.8)	5,471 (24.7)	5,780 (25.7)	6,486 (28.6)	7,039 (25.2)
	20세 미만	46 (39.7)	51 (41.1)	71 (38.2)	70 (37.2)	53 (35.1)	78 (49.1)	63 (35.2)	79 (42.2)	70 (45.8)	76 (43.4)
	20대	1330 (25.6)	1298 (26.9)	1235 (27.0)	1122 (26.3)	961 (24.1)	899 (26.1)	868 (28.3)	935 (28.6)	1051 (30.0)	1187 (28.8)
	30대	1716 (24.9)	1705 (24.3)	1632 (24.4)	1545 (24.8)	1308 (23.7)	1452 (27.4)	1267 (25.2)	1344 (27.1)	1410 (27.3)	1475 (25.2)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0대	1603 (21.2)	1820 (21.5)	1868 (21.8)	1784 (21.6)	1562 (21.7)	1787 (26.1)	1831 (26.8)	1812 (26.9)	1954 (27.7)	2035 (26.3)
50대	582 (16.9)	721 (17.3)	764 (16.9)	868 (17.9)	875 (17.9)	1050 (21.3)	1214 (22.6)	1329 (23.8)	1588 (25.4)	1754 (24.1)
60대 이상	119 (12.6)	142 (11.8)	129 (10.9)	158 (12.5)	177 (13.7)	199 (14.5)	228 (14.0)	281 (16.0)	413 (18.6)	512 (18.6)

범수별 출소 후 재복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지난 10년간 범수별 수형자의 재복역률을 비교해본 결과, 5범 이상 수형자의 재범 비율이 16.8%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4범 10.7%, 3범 8.5%, 2범 5.4%, 초범 2.6%의 순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력범죄자의 재범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범수별 출소자 재복역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소인원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24,356	27,917	
재복역	총원	5,396 (22.3)	5,737 (22.2)	5,699 (22.2)	5,547 (22.1)	4,936 (21.4)	5,465 (24.8)	5,471 (24.7)	5,780 (25.7)	6,486 (28.6)	7,039 (25.2)
	초범	1087 (9.1)	1252 (9.5)	1174 (9.0)	1103 (8.6)	1045 (8.7)	1152 (9.8)	1282 (10.7)	1460 (11.7)	1761 (12.6)	1928 (11.7)
	2범	1093 (23.7)	1176 (24.3)	1190 (23.4)	1076 (22.7)	982 (22.5)	1007 (25.6)	1008 (25.9)	1078 (28.0)	1236 (30.1)	1407 (29.1)
	3범	826 (34.2)	825 (34.3)	816 (35.0)	817 (35.8)	711 (34.0)	694 (38.7)	691 (40.0)	720 (40.7)	774 (43.0)	828 (43.3)
	4범	655 (41.4)	674 (39.2)	635 (40.8)	622 (40.4)	518 (40.4)	590 (47.0)	557 (47.2)	526 (46.9)	561 (51.0)	609 (52.1)
	5범	1735	1837	1,884	1,929	1,680	2,022	1,933	1,996	2,154	2,267
	이상	(48.0)	(49.6)	(50.5)	(51.9)	(50.5)	(61.3)	(58.7)	(60.8)	(64.2)	(64.8)

죄명별 출소 후 재복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과실범의 재복역률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위험군 분류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수형자의 재복역 발생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절도, 사기·횡령 수형자의 재범역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0〉 죄명별 수용자의 재범역 현황(2011년~2020년)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소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소인원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22,484	24,356	27,917	
재범역	총원	5,396 (22.3)	5,737 (22.2)	5,699 (22.2)	5,547 (22.1)	4,936 (21.4)	5,465 (24.8)	5,471 (24.7)	5,780 (25.7)	6,486 (28.6)	7,039 (25.2)
	고위험 범죄	1,143 (19.4)	1,231 (20.5)	1,210 (21.1)	1,112 (20.7)	1,044 (20.0)	1,198 (23.7)	1,325 (24.9)	1,474 (26.6)	1,593 (26.8)	1,558 (23.4)
	재산 범죄	2,893 (24.5)	2,982 (24.3)	3,082 (24.3)	3,044 (23.7)	2,723 (23.7)	2,871 (26.7)	2,731 (26.1)	2,782 (25.9)	2,953 (25.9)	3,353 (25.5)
	마약류	833 (41.5)	886 (38.6)	781 (40.7)	784 (46.0)	638 (42.3)	796 (49.6)	733 (47.2)	794 (48.4)	693 (48.9)	744 (45.8)
	과실범	296 (15.7)	348 (14.9)	310 (13.7)	268 (14.8)	272 (15.6)	253 (16.8)	297 (16.2)	317 (18.4)	589 (27.3)	640 (25.1)
	기타	231 (9.0)	290 (10.0)	316 (10.0)	339 (10.2)	259 (8.4)	347 (11.2)	385 (13.1)	413 (14.5)	658 (19.3)	744 (18.9)

* 고위험 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재산범죄: 절도, 사기·횡령

III

국내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

1. 수형자 재위험성평가(CO-REPI) 평가

수형자의 본 건 범죄와 범죄경력, 재범환경이나 재범촉발요인, 심리검사 결과 등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2년 법무부에서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COr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를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분류심사에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에 따라 평가한다. 재위험성 평가 결과는 수형자 처우 계획 수립, 가석방 신청,

석방 후 보호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한다. 외국인, 심신미약자 등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제2항에 따라 수형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문항	내용
1	성별 여자(0), 남자(1)
2	죄명 기타범죄(0), 절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1), 마약류, 성폭력(2), 환각물질흡입(3)
3	피해자 아는 사람/해당없음(0), 모르는 사람(1)
4	범죄 시 정신상태 정상(0), 주취상태 등 비정상(1)
5	본건 및 과거징벌횟수 없음(0), 1회(1), 2회(2), 3회 이상(3)
6	이전범죄 전체 형기 없음~3년 미만(0), 3년~5년 미만(1), 5년~10년 미만(2), 10년 이상(3)
7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 0회(0), 1회(1), 2회 이상(2)
8	최초 형확정 연령대 (본범포함) 30대 이상(0), 20대(1), 10대(2)
9	재범기간 없음, 3년 이상(0), 6월~3년 미만(1), 6월 미만(2)
10	이전 범죄 출소연령대 없음, 20대 이하(0), 30대(1), 40대(2), 50대 이상(3)
11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 0회(0), 1회(1), 2회 이상(2)
12	동거횟수 0~1회(0), 2회(1), 3회 이상(2)
13	학창시설(18세 이하) 처벌경험 없음(0), 있음(1)
14	범죄 시 직업 일용근로자 외의 직업(0), 일용근로자(1), 무직(2)
15	입소전 경제상태 ①~④번(0), ⑤매우 어려움(1)
16	입소전 거주상태 그 외 거주지(0), 주택 외 시설(1), 노숙, 보호시설(2)
17	정신병원 치료경력 (필요성) 없음(0), 있음(1)
18	학력 고등학교 이상(0), 중졸 이하(1)
19	출소 후 재범환경 3.8점~5점(0), 3.1점~3.7점(1), 2.4점~3점(2), 0점~2.3점(3)
20	공권력에 대한 태도 3.6점~5점(0), 3.2점~3.5점(1), 2.8점~3.1점(2), 0점~2.7점(3)
2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3.8점~5점(0), 3.3점~3.7점(1), 2.8점~3.2점(2), 0점~2.7점(3)
22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45점 이하(0), 46~47점(1), 48점~52점(2), 53점 이상(3)
23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41점 이하(0), 42~44점(1), 45점~51점(2), 52점 이상(3)

위의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총 23개의 항목은 1번 문항부터 18번 문항까지는 정적요인이며, 19번 문항부터 23번 문항까지는 동적요인으로 정적요인 33점과 동적요인 15점을 합산

한 총점 48점으로 환산하여 <표 12>의 점수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REPI 1에서 REPI 5 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표 12> 재수용 위험등급

재수용 위험등급	점수구간	재수용 위험성	내용
REPI-1	0점-6점	거의 없음	사회적응능력이 충분함
REPI-2	7점-10점	없음	사회적 처우를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이 가능함
REPI-3	11점-16점	있음	사회적 지원,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배양이 필요함
REPI-4	17점-21점	높음	시설내 생활적응 및 관련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함
REPI-5	22점 이상	매우 높음	전문적인 치료나 문제행동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됨

입소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신입평가에서 측정한 다음 이후 형기 3분의2 경과시점인 정기재심사를 실시하는 정기평가 때 실시한다. 또한 무기형이거나 집행할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 시점에 도달한 때와 20년 시점 이후 매3년 시점에 도달한 때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표 13>와 같이 교정처우성과, 교정성적, 생활태도, 사회복귀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의 점수를 <표 14>과 같이 환산한 값을 고려하여 기존의 REPI 등급을 조정한다. 형기 3분의 2 정기재심사 시기보가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정기평가의 형기 3분의2 정기평가에 준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평가한다(「분류처우 업무지침」제74조 제2항).

집행유예의 취소를 포함한 실효 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감형, 재심청구로 인한 형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부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분류처우 업무지침」제75조 제1항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 수형자에게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은 공개하지 않으나, 수형자가 자신의 REPI 등급을 알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에 한해서 판정 또는 변경된 등급을 알려준다(「분류처우 업무지침」제76조).

2. 고위험군 위험관리수준 평가

‘동기없는 범죄’, ‘사이코 패스’ 등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는 살인, 성폭력, 방화, 폭력 등으로 형기 2년 이상을 확정 받은 수형자 중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피해가 큰 수형자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선별심사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개별처우하는 등의 관리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8년에 정식기구로 인정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분류센터는 2017년 광주와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운영되었으며, 2020년에 정식기구로 인정받았다. 총 3곳의 분류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운영 예정 중이다. 이러한 분류센터는 미국은 전역 193개의 분류전담센터가 운영 중이며, 일본은 8개의 분류조사센터가 운영중으로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분류심사를 통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법무부, 2020). 수형자의 재심사를 위한 지표는 <표 13>과 같고, REPI 등급 조정과 관련된 평가등급은 <표 14>와 같다.

<표 13>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문항		내용
1	경비처우급	S1급(1), S2급(2), S3(3), S4(4)
2	교정처우 성과	매우 높음(1) : 학사고시 이상 학위취득, 기사이상 자격취득, 전국대회 입상,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높음(2) : 전문학사, 산업기사, 지방대회 입상 보통(3) : 기능사, 한자검정능력취득, 칭찬수형자 등 기관내 표창수상, 각종 정보화 자격, 외국어 전문과정 수료 처우 성과 없음(0)
3	형집행 기간	형기 5/6경과(1), 형기 2/3경과(2) *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20년 초과자의 20년 시점과 이후 매3년 시점은 형기 5/6경과로 평가
4	교정성적	8점 이상(7점 이상)(1), 7점(6점 이상)(2), 6점(5점 이상)(3), 5점 이하(4점 이상) * 심사 시 평정 소득점수 기준 * 5/6를 경과한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 점수 적용
5	징벌관련 사항	징벌 없음(1), 경고(2), 경고·금치 외 처분(3), 금치 1회 이상(4) * 심사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징벌 유무
6	미납 벌금 여부 (또는 추가형)	없음(1), 벌금 5백만원 미만(2), 벌금 1천만원 미만(3), 벌금 1천만원 이상(추가형 있음)(4) * 합산한 벌금액수 기준 * 예정된 추가형 또는 집행유예실효 * 미납된 벌금 등 고려

〈표 14〉 재범가능성(재심사) 등급과 REPI등급 조정기준

재범가능성	점수구간	조정기준
낮음	8점 이하	REPI등급 상향 조정 가능
보통	9점-11점	현 REPI 등급 유지
높음	12점-14점	REPI 등급 하향 조정 또는 유지 가능
매우 높음	15점 이상	

「분류센터 운영지침」제 12조의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범죄 유형은 〈표 15〉와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81조에 따른 노인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9조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수형자, 동규칙 제205조에 따른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수형자는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정밀 분류심사 및 위험관리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환자, 조사 중인 수형자, 징벌 집행중인 수형자 및 분류심사 거부자의 경우 유예자로 관리하며, 유예사유가 종료된 후 필요한 경우 정밀 분류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분류센터 운영지침」제 13조 제2항).

〈표 15〉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

범죄유형	구체적 죄명
살인 관련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의 살인 관련 범죄 (※ 과실치사, 업무과실·중과실치사 등 과실범은 제외)
성폭력 관련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 인신매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보내거나 촬영하는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제외) (※ 성매매 광고, 성매매, 성매매알선 및 방조, 성매매강요(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는 제외)
방화 관련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의 방화 관련 범죄 (※ 업무상실화, 중실화, 실화 등 과실범은 제외)
폭력 관련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의 상해와 폭행 관련 범죄 일체의 강도 관련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폭력, 상해 관련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절도죄 제외), 제5조의 5, 제5조의 10 위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p>(※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등 과실범은 제외)</p>
약취, 유인, 인신매매 관련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이외의 약취, 유인, 인신매매에 관한 죄

미국의 TPCI모델(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Model)에 기초한 수형자 위험성관리를 위한 분류심사요소는 RNR(Risk-Need-Responsivity)원칙에 입각하여 설계하였다(이윤호, 2015). RNR 원칙은 Andrews와 동료들(1990)이 교정활동을 통한 재범예방을 위하여 강조한 요소로서, 가해자 처벌 패러다임을 강조한 전통적인 교정 문화에서 가해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재통합적 차원에서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이다(심혜인, 2021).

위험성 원칙, 필요성 원칙, 대응성 원칙에 따라 수형자 분류심사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들은 <표 16>과 같다(유병철, 2010).

<표 16> RNR원칙에 입각한 분류심사 요인

구분	내용
위험성 원칙	이전 범죄력의 심각성, 아동학대경험, 약물남용경험, 교육·고용·가족·사회적 실패경험 등
필요성 원칙	반사회적 태도·가치·신념, 반사회적 동료·주변인, 약물남용, 교육결함, 정신·건강문제, 생활기술(life skill) 및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의 결함, 성격결함(분노, 공격성, 이기주의, 충동성 등) 등
대응성 원칙	학습능력과 유형, 변화욕구, 인성유형, 대인관계와 대화기술의 수준 등

이를 바탕으로 교정기관에서는 고위험군 수형자를 ‘위험관리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험관리등급(RM, Risk Management)을 분류한다. 위험관리 종합 평가서의 내용은 <표 1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7〉 위험관리(RM) 종합 평가서

구분	내용
1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죄명, 형기, 범수(횃수), 경비처우급, REPI 등급, 형기종료일
2	환경적 요인 출생관계, 형제관계, 부모의 직업, 가정환경, 성장과정상 특이사항, 부모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 등 학창시절(형사처분, 보호처분, 등) 직업력(일시적 등), 혼인관계(이혼, 동거 등), 혼인 시 자녀양육 태도 등
3	범죄관련 요인 과거범죄의 심각성 과거 범죄 경력, 범죄행위의 진전정도, 반복적 범행사실 등 과거 범죄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하여 기재
4	범죄관련 요인 본 건 범죄의 심각성 본 건 범죄사실 기재, 심리적 측면과 연관시켜 범행의 동기 등을 기술하고, 본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수준을 기재
5	심리적 요인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문장완성 검사 등
6	위험관리 종합평가 환경적요인, 범죄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와 위험관리 수준 등
7	요구되는 처우 프로그램 필수적인 처우 프로그램 제시

이를 바탕으로 교정기관 「분류처우」제27조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관리 수준의 각 RM등급별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위험관리(RM) 등급

RM 등급	범죄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	내용
1등급	낮게 평가됨	교정시설의 통상적인 처우·관리가 가능한 수준
2등급	보통으로 평가됨	교정시설의 통상적인 처우·관리가 가능하고, 석방 시 필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
3등급	높게 평가됨	석방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범위험 관리가 필요한 수준
4등급	매우 높게 평가됨	특별관리 대상으로 석방 시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개입과 원조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

〈표 19〉 석방 전 위험관리(RM) 종합 평가서

구분	내용	
1	종합 평가	범죄사항, 위험관리수준, 수형생활에 대한 종합적 평가
2	범죄 사항	본 건 범죄 내용, 범죄/비행경력
3	위험관리수준	환경요인, 범죄요인, 심리요인, 평가결과
4	수형생활	분류심사, 교정성적, 조사/징벌, 상훈/포상, 작업/직업훈련, 교육, 교정/치료프로그램, 특이동정

분류전문기관으로 분류심사 및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고위험군 수형자를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처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형생활 주기에 따라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서울지방교정청에 신설되었으며, 현재는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3곳이 운영 중이며, 2021년에는 대구지방교정청이 운영 예정으로 총 4곳의 분류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IV

수형자 분류 요인

1. 미국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PATTERN)

2018년 미국에서는 연방 수형자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Formerly Incarcerated Reenter Society Transformed Safely Transitioning Every Person Act; First Step of 2018)을 제정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고, 재범 감소 시스템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미연방 교도소에서는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the Prisoner Assessment Tool Targeting Estimated Risk and Needs, 이하 PATTERN) 시스템 지표를 FSA 심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박혜림, 2020). 이 새로운 수형자 위험성 측정 도구인 PATTERN은 수용 중 수형자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위험수준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수형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마련되었다. 남성 PATTERN 도구와 여성 PATTERN 도구로 각 세부 지표 값의 성별의 차이를 두었으며, 일반범죄와 폭력범죄로 분류하였다. 각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의 내용과 기준이 되는 컷오프 점수는 〈표 20〉¹⁾과 같다.

1) 미연방교도소 홈페이지(Federal Bureau of Prisons)수형자(Inmates) First Step Act)PATTERN Risk Assessment (<https://www.bop.gov/inmates/fsa/pattern.jsp>, 최종방문일 2021. 11. 14).

〈표 20〉 미국의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 시스템 지표

문항		일반범죄		폭력범죄		문항	일반범죄		폭력범죄						
		M	F	M	F		M	F	M	F					
1	입소 나이	60세 초과	0	0	0	0	9	모든 사건 경위서 유죄수 (12개월내)	0	0	0	0			
		51세-60세	7	5	4	1			1	1	1	1			
		41세-50세	14	10	8	2			2	2	2	2			
		30세-40세	21	15	12	3			2 초과	3	3	3	3		
		26세-29세	28	20	16	4			0	0	0	0	0		
		26세 미만	35	25	20	5			1	2	1	2	1		
2	성범죄 전과	없음	0	-	0	-	10	심각한 사건 경위서 유죄수 (12개월내)	0	0	0	0			
		있음	1	-	0	-			2	4	2	4	2		
3	폭력범 (PATTERN)	없음	0	0	0	0	11	마지막 (모든) 사건 이후 기간	12개월 이상 또는 사건 없음	0	0	0	0		
		있음	5	0	5	3			7개월-12개월	2	2	1	1		
4	범죄 경력 점수	0-1점	0	0	0	0			3개월-6개월	4	4	2	2		
		2-3점	8	8	4	2			3개월 미만	6	6	3	3		
		4-6점	16	16	8	4			12	마지막 (중대/심각) 사건 이후 기간	12개월 이상 또는 사건 없음	0	0	0	0
		7-9점	24	24	12	6					7개월-12개월	1	2	1	1
		10-12점	32	32	16	8	3개월-6개월	2			4	2	2		
		12점 초과	40	40	20	10	3개월 미만	3			6	3	3		
5	도주 이력	없음	0	0	0	0	13	FRP 거부	아니오	0	0	0	0		
		10년 초과 경미	2	3	1	2			예	1	3	1	0		
		5년-10년 경미	4	6	2	4			0	0	0	0	0		
6	폭력 이력	5년 미만 경미/심각	6	9	3	6	14	이수 프로그램 개수	1	-2	-1	-1	-1		
		없음	0	0	0	0			2-3	-4	-2	-2	-2		
		10년 초과 경미	1	1	1	1			4-10	-6	-3	-3	-3		
		15년 이상 심각	2	2	2	2	15	기술, 직업훈련 프로그램	10개 초과	-8	-4	-4	-4		
		5년-10년 경미	3	3	3	3			0 프로그램	0	0	0	0		
		10년-15년 경미	4	4	4	4			1개 프로그램	-1	-1	-1	-1		
		5년 미만 경미	5	5	5	5			1개 프로그램 초과	-2	-2	-2	-2		
		5년-10년 심각	6	6	6	6									
		5년 미만 심각	7	7	7	7									

문항		일반범죄		폭력범죄		문항		일반범죄		폭력범죄		
		M	F	M	F			M	F	M	F	
7	교육 수준	미등록	0	0	0	0	PATTERN 기준 점수	Minimum	8 이하	5 이하	6 이하	2 이하
		GED 등록	-2	-3	-1	-1		Low	9-30	6-31	7-24	3-19
		고교졸업/GED	-4	-6	-2	-2		Medium	31-43	32-49	25-30	20-25
8	마약 프로 그램 참여	DAP 미완료	0	0	0	0		High	44 이상	50 이상	31 이상	26 이상
		NRADP 완료	-3	-4	-1	-1						
		RDAP 완료	-6	-8	-2	-2						
		필요하지 않음	-9	-12	-3	-3						

2. 재범예측 영향요인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와 미국의 재범위험과 범죄 동인 평가(PATTERN)의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적요인과 동적요인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21>와 같다.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내용은 신입심사와 재심사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정적요인은 수형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범죄특성 등 이미 정해진 기존의 사실을 의미하며, 동적요인은 수용 중 수형자의 의지 또는 태도 등의 변화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미국의 PATTERN의 요인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연방교도소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는 평가지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박혜림(2020)의 연구에서 미국의 PATTERN에 대한 정적요인으로 초범시 나이, 평가 당시 나이가 포함되어 있고, 동적요인으로 수용기간동안 위반행위 여부, 수용기간동안 폭력행위 여부, 연방산업고용여부 등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PATTERN 관련 보고서에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21>과 같이 비교한 결과 미 연방교도소에서 실시하는 PATTERN보다 국내 수형자 분류평가를 위한 지표가 세분화 되어 있는 정보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PATTERN 지표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추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항목이 있다. 형이 확정되어 수용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소이다. 형이 확정되어 수용되기 전 일정기간(PATTERN의 경우 3개월 이내) 동안 추가적인 심각한 또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형확정 전 미결수용상태에서 교정시설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미구금상태일 때는 외부에서 경찰에 신고될 수 있는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1〉 한미 수형자 분류를 위한 평가 지표 비교

구분		CO-REPI	PATTERN
정적요인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학력, 동거횟수, 최초 형확정 연령대(본범포함), 이전 범죄 출소연령대, 범죄 시 직업, 입소전 경제상태, 입소전 거주상태, 정신병원 치료 경력, 범죄 시 정신상태	연령(입소나이), 교육수준
	범죄 특성	죄명, 피해자, 본건 및 과거징벌 횟수, 학장시절 처벌경험, 이전범죄 전체 형기,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 재범기간,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	성범죄전과, 폭력사범 여부, 범죄경력, 도주여부, 폭력전과 이력, 모든 사건 경위서 유죄수(12개월 이내), 심각(중대 사건 경위서 유죄수(12개월 이내), 마지막 (모든)사건 이후 수용기간 마지막 (중대/심각)사건 이후 수용기간
동적요인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교정처우성과(재심사), 교정성적(재심사), 징벌관련 사항(재심사), 미납 벌금여부(재심사)	FRP 거부, 이수한 프로그램 개수, 기술이나 직업훈련 코스, 마약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또한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경제지원과 관련이 있는 FRP 관련 프로그램 거부요인에 대하여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요인이다. 국내에서는 범죄 시 직업, 입소 전 경제상태, 입소 전 거주 상태 등을 통해서 수형자의 경제상태를 측정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형자가 범죄 시 일용직, 무직 등의 직업인 경우에 출소 후 재범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출소 후 경제상태를 향상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의지나 태도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노인범죄자의 재범역률이 감소하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수형자가 됨으로써 기존의 주지위가 박탈됨에 따라서 경력범죄자로 전향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할 때, 출소 후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교정처우

성과로 출소 후 재범환경 부분에 있어서 취업 등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평가가 자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처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복역률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V

결론

국내 수형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수용분류 지표는 현재 교정시설 과밀화 수용과 재범예방을 위한 개별처우를 하는데 주요 핵심 요소이다. 개별처우와 재범예측을 위하여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를 통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 실증연구로는 박종관(2015)의 연구가 유일하며, 연구자는 교정본부의 내부 실무자이다. 여전히 교정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자들이 실증연구를 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국내 교정 운영이 선진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무자 외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박종관(2015)의 연구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과정, 검사도구 제작과정을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재복역 예측 요인으로 활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래피등급이 높은 5등급일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영중인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범을 예측하는 검사도구로 타당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PATTERN과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가 훨씬 정교화되어 있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PATTERN의 경우에는 연방교도소에서 활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각 주의 교도소 또는 민영교도소에서 개별화된 수용분류를 위한 개별지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정재범예측지표는 기존의 교정 분류수용, 개별처우, 재범예방 등과 관련된 요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특성을 남성범죄자에게 측정하는 PATTERN과 달리 국내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RM등급으로 분류하여 처우하는 것으로 더 적극적인 분류수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PATTERN의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형확정 전 일정 기간 동안 문제 행동에 대하여 측정함으로써 범죄성에 대한 연속선

상의 개인특성에 대하여 평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출소 후 환경에 대하여 포괄적인 구성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출소 후 직업계획, 경제여건의 개선정도 이상으로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 신청 또는 관련 지자체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희망하는지의 태도를 자세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2012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개발하여 완성된 교정재범예측지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박종관(2015) 실증연구에서 언급된 검사도구 사용 기간이 짧았던 부분을 보강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2012년 이후부터 수형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REPI 등급과 RM등급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범예측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제60회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제2주제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중심으로 -

- 발 표 :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중심으로 -

김 지 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 | | |
|-------------------------|---------------------------|
| I. 서론 | IV. 가석방 전자감독의 기대효과와 실현가능성 |
| II. 가석방 전자감독의 내용 및 실시현황 | V. 결론 |
| III. 가석방 전자감독의 실행상 쟁점들 | |

I

서론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법무부의 ‘전국 보호관찰기관장 회의’에서 보호관찰 집행방법의 하나로 전자감독이 공식 주제로 다루어진 1998년부터였고(문희갑, 2020), 이후 학계에서도 전자감독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김지선 외, 2013). 그러나 ‘기계에 의한 감시’라는 특성이 다른 보안처분에 비해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더욱 더 큰 우려를 낳았고, 입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기류를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는 2006년 2월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대상 성폭력 및 살해사건이었다(문희갑, 2020).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관심은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일련의 성폭력사건

의 발생은 다시 전자감독제도를 확대·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지난 13년간 전자감독제도는 12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법 시행 이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 부착기간의 연장, 성폭력범죄 부착명령 청구 요건 완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도입과 외출제한명령 및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의 의무적 부과,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이 대부분의 법 개정은 형기종료 전자감독 그중에서도 성폭력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개정과는 달리 최근 12차 법률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0년 2월 법률개정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가 도입되면서 형사사법의 전 단계에서 전자감독 처분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특정범죄에 한정되어 있던 적용범죄가 새롭게 도입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와 기존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경우에는 전체 범죄로 확대되게 되었다. 처음 전자감독 도입 시 초점이 보안처분인 형기종료 전자감독이었고, 여기에 2010년 소급적용제도까지 도입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최근 변화는 전자감독이 가석방과 보석제도의 확대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 재판 전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후 단계에서 시설구금의 폐해를 줄여 줄 수 있다는 희망적 기대로 인해 이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개정으로 인한 변화의 한 축인 일반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이 확대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주된 문제의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대로 검증된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결과 없이 전자감독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최초 도입목적이 형기종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험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최초 발의안이 법무부에 의해 수정되어 다양한 형사사법 단계로 확대되어 시작되었으나 관련 법률과 이후의 운영 시스템은 계속해서 형기종료 전자감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러한 포괄적인 운영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 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와 ‘전자감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감시’는 범죄자의 위치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기술”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맥락

에서 사용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 이외에 보호관찰관과의 대면접촉이나 원호,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제공 등과 같이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기능까지 겸비한 포괄적인 제도를 의미할 때에는 ‘전자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II 가석방 전자감독의 내용 및 실시 현황

1. 가석방 전자감독

전자감독은 적용되는 형사사법 단계에 따라 보통 ‘재판 전 단계에서의 전자감독’과 ‘재판 후 단계에서의 전자감독’으로 구분한다(한영수 외, 2013). 2020년 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재판 전 단계의 전자감독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2020년 2월 개정되고, 8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제는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전자감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후 단계의 전자감독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감독(이하; 집행유예 전자감독), 교정시설에서 조기석방의 조건으로 실시되는 전자감독, 형 집행을 종료한 고위험범죄자에 대해 사회방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전자감독(이하, 형기종료 전자감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 조기 석방의 조건으로 실시되는 전자감독은 가석방, 가종료 및 가출소 전자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석방 전자감독은 범죄유형에 따라 특정범죄 가석방 전자감독과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또한, 형기종료 후 전자감독은 2010년 성폭력범죄자에 한해 소급적용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형기종료 전자감독과 소급 형기종료 전자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각 전자감독 유형별로 적용범죄, 결정기관, 부과요건, 적격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의 명칭, 부착 기간, 보호관찰 부과 여부, 준수사항의 유형과 위반 시 처벌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표 1]은 전체 전자감독제도 내에서 가석방 전자감독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전자감독 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

1)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에서 특정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요건을 달리하고 있고, 실무상 두 집단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명명할 필요가 있다.

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 한나라당에서 전자감독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 한 대상자에게 법원의 선고로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법무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형기종료 이외에도 가석방·가중료·가출소와 집행유예 전자감독까지 포함시켰고, 이 안이 국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후 전자감독의 적용범죄가 성폭력에서 미성년자 유괴(2009년), 살인(2010년), 강도범죄(2014년)로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범죄도 성폭력범죄에서 4대 특정범죄로 확대된 채로 유지되다가, 2020년 2월 법 개정으로 가석방 전자감독에 한정해서 적용범죄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 즉 전체 범죄로 확대되었다.

[표 1] 전자감독 유형별 요건 및 집행

적용단계 (시행 연도)	재판 전		재판 후				
	보석 (2020)	집행유예 (2008)	가석방 (특정범죄:2008 일반범죄:2020)	가중료 (2008)	가출소 (2008)	형기종료	
						일반(2008)	소급 (2010)
대상 범죄	전체 범죄	특정 범죄	전체 범죄	특정 범죄	특정 범죄	특정 범죄	성폭력 범죄
결정기관	법원	법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치료감호 심사위원회	법원		
요건	임의적	임의적	특정 범죄만 필요적	임의적	임의적	임의적	임의적
조사	결정 전 조사	판결 전 조사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			청구 전 조사	
부착 기간	구속요건 만료 시까지	보호관찰기간 (최장 5년 이내)	가석방기간 (최장 10년 이내)	보호관찰기간 (3년 이내)	보호관찰기간 (3년 이내)	법정형연동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30년 • 징역형 하한 3년이상 유기징역 : 3년~20년 • 징역형 하한 3년미만 유기징역 : 1년~10년 (최장 45년)	10년 이내
보호관찰	×	○	○	○	○	○	○
준수사항	×	보호관찰법상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				전자장치부착법 특별준수사항	

적용단계 (시행 연도)	재판 전		재판 후				
	보석 (2020)	집행유예 (2008)	가석방 (특정범죄:2008 일반범죄:2020)	가중료 (2008)	가출소 (2008)	형기종료	
						일반(2008)	소급 (2010)
중간심사 및 임시해제	×	중간심사 : 부착 명령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임시해제 : 집행 개시 후 3개월경과 시마다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결정					

가석방 전자감독 부과의 결정 권한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있지만, 실질은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가석방 적격검사를 거쳐 가석방이 결정된 자가 법원에서 부착 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범죄자인 때에는 ‘필요적’으로 전자감독을 부과하며,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감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때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²⁾ 그러나 실무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사안조사³⁾ 과정에서 가석방 예정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이 수반된 가석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거부 의사를 밝힐 때는 이를 가석방 심사자료에 기재한다. 그리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심사 시에 이를 참고하여 가석방 예정자가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면 가석방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한영수 외, 2013). 따라서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범죄 가석방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부착 불요 결정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 불요성 심사 및 결정이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박정일, 2020).

[표 2] 특정사범 가석방자 전자장치 부착 불요결정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석방자	186	333	313	398	296	304	348	408	599	563	538
부착결정	186	329	306	397	295	302	347	403	599	560	535
불요결정	-	4	7	1	1	2	1	5	-	3	3

자료: 박찬걸(2019), 70.

2) 보호관찰법 제24조는 보호관찰 필요 성심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73조의2 제2항은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원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심사가 아니라 보호관찰의 불요성심사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사안조사는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 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 대책, 석방 후의 재범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가능성에 관해 조사하여 가석방 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 신청과 동시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해당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해당 성인 수형자를 면담하여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하거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한영수 외, 2013).

이에 비해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결정된 자에 대한 필요적 전자감독 부과 규정이 없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필요성 심사 및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상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 효용 의무 및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⁴⁾ 또한, 보호관찰법률 제32조 제2항의 일반준수사항 규정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피해자 접근금지,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특별 준수사항(보호관찰법률 제32조 제3항)을 부과할 수 있다.⁵⁾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되거나 준수사항이 추가·변경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호관찰소장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석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그에 따른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전자장치의 부착 또한 종료하게 된다.

한편,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도 전자장치부착법률에 따른 임시해제의 대상이다. 임시해제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 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부착 기간 중에 그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로, 2020년 법 개정 이전의 명칭은 ‘가해제’이다. 임시해제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나 보호관찰소장이 부착 명령 집행을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해제되면 부착 명령의 집행과 더불어 보호관찰도 임시해제된다.

4) 전자장치 효용의무와 신고 의무는 모든 유형의 전자감독에 동일하게 부과된다.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는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이다. 신고의무는 1) 형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 신고할 것, 2)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5)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부착법률 제9조2의 준수사항을 부과받는다.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기타를 포함하여 6가지이며,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하나인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의 준수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리 방법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2. 가석방 전자감독 실시 현황

가석방 전자감독이 전체 전자감독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표 3]에서는 전체 전자감독 접수⁶⁾ 및 실시 건수와 처분유형별로 접수건수의 연도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2008년은 전자감독이 도입된 첫해로 그해 9월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외하고 살펴보면, 전자감독 접수건수는 2009년 347건에서 2011년 1,13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시 천 건대로 증가하였다. 2018년 929건, 2019년 830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2,383건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매해 접수되는 사건(신수사건)에 집행이 계속되는 사건(구수사건)을 합친 실시건수는 2009년 5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6,044건이었다. 지난 12년간 전체 전자감독 접수건수는 약 7배 정도 증가하였고, 실시건수는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전자감독 접수건수는 2,383건으로 2019년의 830건과 비교해 2.8배 정도 증가하였고, 실시건수는 6,044건으로 2019년의 4,563건과 비교해 1.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접수건수에 비해 실시건수가 더 많고, 증가속도가 더 빠른 이유는 형기종료 전자감독의 경우 2번에 걸친 법 개정으로 부착기간이 연장돼 평균 부착기간이 10년을 상회해 집행기간이 길어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전자감독 접수건수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감을 반복하고, 그 폭도 상당히 크다. 그런데 [표 3]에서 처분유형별로 전자감독 접수건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종료 및 가출소와 집행유예 전자감독은 접수건수가 매우 적어, 전체 전자감독 접수건수의 변동은 주로 형기종료, 특히 소급 형기종료와 가석방 전자감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석방 전자감독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329건에서 2012년에는 295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3년 이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99건으로 최고치를

6) [표 3]은 해당연도에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전자감독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무부가 매년 전자감독 실시 현황으로 공표하는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표 3]에 제시된 자료 중 형기종료 전자감독은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사건 수와 차이가 있다. 형기종료 전자감독은 법원에서 선고된 이후 대상자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된 이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개시되기 때문에, 선고 후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표 3]에서 2008년과 2009년 형기종료 전자감독 접수건수는 0건과 1건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형기종료 전자감독 선고건수는 2008년 35건, 2009년 167건이었다. 그리고 [표 3]에서는 형기종료 전자감독 접수건수가 2016년 이후 대체로 400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건수는 2016년 303건, 2017년 302건, 2018년 318건, 2019년 330건으로 300건 대에서 증감을 반복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2010년에서 2014년 법원의 형기종료 전자감독 선고건수가 600~700건대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선고받은 대상자들이 징역형 집행을 완료하면서 최근 들어 전자감독 집행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법원의 형기종료 전자감독 선고건수는 2014년 이전보다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청구와 선고가 거의 마무리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반 형기종료 전자감독에 대한 선고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결과, 일반 형기종료 전자감독에 대한 선고건수의 감소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자감독 선고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전자감독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만 출소 후 체계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라는 대체재가 도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하였다. 이후 4년 연속 감소추세가 이어져 2019년에는 410건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에는 1,895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6배나 증가하였다.

[표 3]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접수 및 실시건수 현황 (2008~2020년)

단위 : 건(%)

연도	접수사건								실시 사건
	계	형기종료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집행유예	
		계	일반	소급					
2008	188	-	-	-	186(98.9)	1(0.5)	0(0.0)	1(0.5)	205
2009	347	1(0.3)	1(0.3)	-	329(94.8)	12(3.5)	0(0.0)	5(1.4)	591
2010	465	116(24.9)	18(3.9)	98(21.1)	306(65.8)	12(2.6)	2(0.4)	29(6.2)	714
2011	766	312(40.7)	68(8.9)	244(31.9)	397(51.8)	6(0.9)	5(0.7)	46(6.0)	1,561
2012	526	186(35.4)	118(22.4)	68(12.9)	295(56.1)	28(5.3)	2(0.4)	15(2.9)	1,747
2013	1,136	775(68.2)	179(15.8)	596(52.5)	302(26.6)	14(1.2)	13(1.1)	32(2.8)	2,555
2014	950	539(56.7)	241(25.4)	298(31.4)	347(36.5)	24(2.5)	23(2.4)	17(1.8)	3,260
2015	836	367(43.9)	263(31.5)	104(12.4)	403(48.2)	44(5.3)	17(2.0)	5(0.6)	3,598
2016	1,133	401(35.4)	333(29.4)	68(6.0)	599(52.9)	100(8.8)	26(7.9)	7(0.6)	4,066
2017	1,154	461(39.9)	382(33.1)	79(6.8)	560(48.5)	91(7.9)	30(2.6)	12(1.0)	4,350
2018	929	376(40.5)	340(41.0)	30(2.5)	490(52.7)	41(4.4)	13(1.4)	9(1.0)	4,668
2019	830	361(43.5)	340(41.0)	21(2.5)	410(49.4)	41(4.9)	7(0.8)	11(1.3)	4,563
2020	2,383	428(18.0)	392(16.4)	36(1.5)	1,895(79.5)	49(2.1)	5(0.2)	6(0.3)	6,044

자료: 법무부 전자감독과 내부자료(2021).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범죄가 도입 시 성폭력범죄에서 미성년자 유괴범죄(2009년), 살인범죄(2010년), 강도범죄(2014년)로 확대되었으나, 2010년부터 성폭력사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금지되었고,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한 해 발생건수 자체가 매우 적어 두 범죄유형은 가석방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변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이 결정되면, 필요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불요성 심사를 하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까지 가석방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변동은 한 해에 가석방이 허가되는 살인과 강도사범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가석방 전자감독이 일반범죄로 확대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전체 가석방 전자감독 접수사건은 1,895건으로 급증하게 된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895건 중 1,525건(80.5%)이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사건으로 8월부터 시행된 이후

매달 평균 3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전자감독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조기 가석방 실시로 1차 608명, 2차 447명의 일반 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사건이 보호관찰소에 접수되었고,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접수건수도 2019년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석방 전자감독이 전체 전자감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98.9%와 94.8%가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였으나, 이후 일반 및 소급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중이 50~60%대로 낮아지고, 2012년 말 소급 형기종료에 대한 합헌결정이 난 후 소급 형기종료 예정자에 대한 법원 선고가 급격히 증가한 2013년에는 26.6%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비중은 다시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의 비중을 앞질러 최저 48.2%에서 최고 52.9%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79.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적어도 대상자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가석방 전자감독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를 대표하게 되었다.

III

가석방 전자감독의 실행상 쟁점들

1. 가석방 허가자의 재범위험성과 전자감독

형기종료 전자감독은 사회 내 보안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기종료 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은 ‘재범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은 가석방이 결정되면 필요적으로 부과되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없지만,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은 전자감독이 필요적 부과사항이 아니므로, 일반범죄 가석방 허가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일반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이 확대된 근거 조항인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 제2항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과요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19조(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시행령 제19조는

교도소장은 가석방 예정자의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형명 및 형기 등과 처우등급 중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처우등급 및 재범위험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내고(제2항),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 시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경력, 범죄내용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제6항)고 규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나열되어 있지만,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부착 근거도 결국 재범위험성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요하게 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장치 부착 결정에서도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만, 그 각 위원회에서 고려하는 재범위험성의 방향은 반대이다. 가석방은 재범위험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람에게 허가해야 하는 반면에,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위험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사람에게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찬걸, 2019; 박정일, 2020). 특정범죄 사범은 가석방 허가 시 필요적 전자감독 부과 대상이고, 보호관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위에서 지적한 대로 통과의례에 불과하여 실무상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부딪힐 일이 거의 없으며, 단지 가석방 예정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보호관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지 의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하에서 일반범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도 가석방 허가자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이 부과된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이들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의 41.9%는 사기사범이었고, 그다음은 교통사범 21.5%, 폭력사범 8.3%의 순이었다. 재범위험성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기는 하지만,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즉 범죄의 중대성이나 심각성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굳이 개별적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사범이나 교통사범을 고위험범죄자라고 판단하기는

7) 교정기관에서 재범예측지표(REPI)라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예측지표의 항목이 과거 범죄(이전 범죄의 전체 형기, 최초 형확정 연령대, 이전 범죄 출소 연령대, 학창시절 처벌 경험 등)와 과거 생활환경(성별, 동거횟수, 입소전 경제상태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 생활 이후의 생활, 인식의 변화 등이 포함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강동범·이강민, 2017; 박미량, 2015), 이처럼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정적 위험요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청구전조사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KSORAS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지선 외(2013)을 참조.

어렵다.

또한, 보호관찰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감독 담당직원은 특정범죄 가석방 대상자의 대부분을 친범죄성향이 낮고, 지도감독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의 25.9%를 친범죄성향을 갖는다고 평가하였으나, 반면에 특정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4.1%만 친범죄성향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의 49.6%에 대해 지도감독 순응도가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83.1%가 지도감독 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수준이 결코 높지 않으리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자감독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전자감독 담당직원은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반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는 다른 유형의 전자감독 대상자와 비교해 지도감독하기 가장 쉬운 대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들에게 가석방 전자감독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유는 전자감독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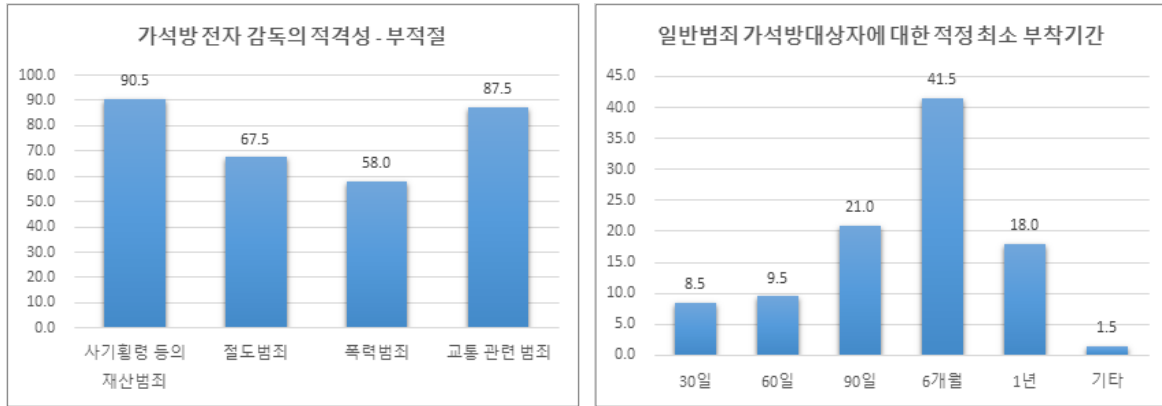
전자감독 담당직원은 일반범죄 전자감독 대상에 적합한 범죄자 유형을 질문한 결과(그림 1] 참조), 90.5%가 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자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전자감독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범죄자유형은 교통관련 범죄자(87.5%), 절도범죄자(67.5%), 폭력범죄자 (58.0%)였다. 폭력범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적격자라는 응답 비율(19.5%)보다 부적격자라는 응답 비율(58.0%)이 더 높기는 하였지만, 4가지 일반범죄 중 적격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해 부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짧은 부착 기간 때문이다.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 기간이 대부분 3개월 미만이고, 짧은 경우 1개월 미만인 경우도 있어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장치 사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대상자가 전자장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어 해소하고 나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시작될 즈음이면 전자감독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전자장치 탈부착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직원은 일반범죄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착 기간이 6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결과, 담당직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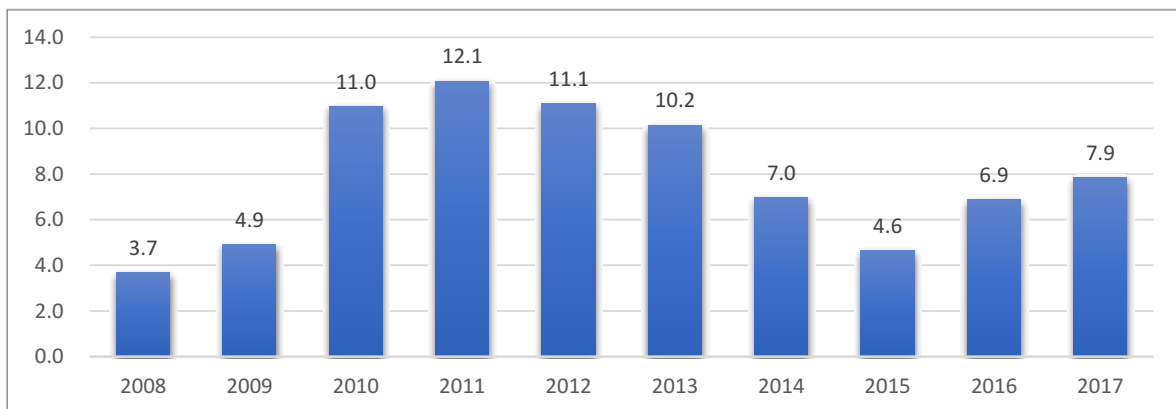
부착기간이 6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고, 적어도 3개월 이상 (3개월~1년까지)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80.5%나 되었다.

[그림 1]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담당직원의 의견



그러나 가석방제도의 운영실무가 현재처럼 형집행률 85% 이상이 되어야 허가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일반범죄 가석방 허가자 중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서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적정한 대상으로 판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를 보면, 살인과 강도범죄를 저지른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평균 부착 기간은 2011년 12.1개월로 가장 길고, 2009년 4.9개월로 가장 짧아 연도별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약 8개월이다. 살인과 강도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잔여형기에 따른 부착기간이 평균 8개월이라면, 이외의 일반범죄의 잔여형기는 더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잔여형기에 따른 부착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평균 부착기간



2.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성과 적용된 전자감시기술의 적합성

범죄자 관리감독에 전자감시기술이 도입된 이후 다양한 유형의 전자감시기술이 개발되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전보다 더 기능이 향상된 전자감시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감시기술은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전자감시기술은 범죄자가 착용한 장치와 수신기 장치 사이에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방식의 통신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유선전화를 통해서 관제센터에 보내지는 방식이다. 1세대 전자감시기술로는 범죄자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없으며, 개인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제한으로 주로 외출제한(curfew)이나 재택구금(home detention)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세대 전자감시기술은 재택구금 전자감시라고 불린다.

지역사회 내 범죄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인공위성항법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2세대 전자감시 기술이다. GPS 등과 같은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여 관제센터에 송신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satellite tracking monitoring)⁸⁾이라고 불린다. 수집된 범죄자의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방식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실시간(active) 방식, 단속적(passive) 방식 및 병행(hybrid)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실시간(active)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위치확인 장치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단속적(passive) 방식은 위치확인 장치가 위치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지만, 대상자가 주거지에 들어와 위치확인 장치를 재택장치에 연결했을 때에 전화선을 사용하여 그날 수집한 위치정보를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병행(hybrid) 방식은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관제센터에 위치정보를 전송하지만,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시간(active) 방식으로 전환된다.

실시간(active) 위치추적 전자감시는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범죄자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고, 범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지역(inclusion zone)과 출입할 수 없는 지역(exclusion zone)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중요 경보일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는 지급된 수신기를 통해 범죄자가 미리 설계된 거리 내로 가까이 접근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장

8) 보통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전자감독으로 알려져 있으나, GPS는 미국 국방부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GNSS의 한 종류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운영 시 미국의 GPS와 더불어 러시아가 구축한 글로나스(GLONA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함께 사용하므로 GNS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9) RF방식에서도 실시간과 단속적 방식이 있으나, 재택구금에 사용되는 RF방식에서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

치에는 훼손이나 전력 상태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에 알림이 전송된다.

RF 전자감시기술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감시, 특히 그 중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감시기술은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내 범죄자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부착장치의 물리적 존재와 더불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은 피부착자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Hucklesby, 2009). 반면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감시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강도 높은 통제는 매우 징벌적이고, 침해적인 것으로 경험되며, 따라서 더 많은 인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RF 방식과 위치추적 방식 모두 범죄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만 알려준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훨씬 더 자세하고, 광범위하며, 침해적이다. 위치추적정보에 지리정보를 겹쳐 활용하면, 피부착자의 습관, 일상 및 사고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피부착자가 방문한 위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피부착자와의 접촉 빈도 및 기간과 관련된 정보에 포함된다.

범죄자 관리에 전자감시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1세대인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방식을 활용한 재택구금 전자감독을 먼저 도입하였고,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감독의 목적 및 대상자의 유형을 고려해 2세대인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다.¹⁰⁾ 재택구금 전자감독제도는 주로 교통범죄, 절도범죄, 경한 폭력범죄 등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단기 자유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감독은 성폭력, 조직폭력, 살인범죄와 같은 고위험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형기종료 후나 가석방 단계에서 활용되며, 기간이 재택구금 전자감독에 비해 훨씬 길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독 도입을 위해 시범실시의 단계를 거쳤으나 중단하기도 했고, 미국을 제외한 호주, 독일 등의 국가는 도입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는 1세대 방식을 거치지 않고 2세대인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전격 도입하였다. 이 시기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은 당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하여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한영수 외, 2013)으로 적용대상이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어 있었고, 형기종료 대상자의 경우에는 고위험범죄자를 선별하기 위

10)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호주,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등이다.

한 청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였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전자감독 유형이 확대되면서, 고위험범죄자로부터 공공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목적으로 형기종료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채택한 위치추적 전자감시기술이 이외 가석방·가종료·가출소 전자감독, 심지어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재범위험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상에게도 적용되었으나, 전자감독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였을뿐 상대적으로 전자감독에 적용된 전자감시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다. 이후 위치추적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범죄자의 일상에 대한 촘촘한 통제와 범죄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한다는 성과가 부각되면서 적용범죄는 미성년 유괴, 살인, 강도 범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가석방 전자감독에서 적용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된 상황에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감시기술’이 과연 모든 대상자에게 적절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고위험범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들에게는 보안처분의 목적으로 전자감독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처럼 하나의 전자감시기술, 그것도 가장 침해적인 전자감시기술을 채택한 후, 이를 목적과 재범위험성이 다른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운영방식은 프로그램 및 감독의 강도는 범죄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위험 원칙(risk principle)’(Andrew et al., 1990)과 배치되며,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주로 경미한 범죄자에게 사회 내 제재를 부과하면서 단독으로 혹은 다른 제재에 부가해서 전자감독을 실시했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가 GPS 방식, 그것도 단속적 방식의 GPS 전자감독의 활용에 대해 시범 실시와 평가연구까지 마쳤으나 전국 확대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나 RF 방식과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국가에서도 미국을 제외하면, 재판 전 단계의 보석이나 형기를 종료하고 지역사회로 돌아온 고위험범죄자를 관리할 목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성찰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3.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실행을 위한 인력 부족

초기에 전자감시 기술의 도입은 보호관찰관의 업무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었고,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에 의한 범죄자 감시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끊임없이 울리는 경보의 처리 및 대응,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경보 처리를 위한 비상 근무 체계, 오경보 발생과 기술적 오류에 대한 조

치, 전자장치의 교체 및 관리, 대상자의 이동경로 시연 및 분석과 그 결과 보고 등과 같은 전자감독에 고유한 새로운 업무의 발생과 그 업무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보호관찰 업무와 비교해 오히려 업무량과 업무강도(workload)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urner & Jannetta, 2007; Tennessee Board of Probation and Parol, 2007; Gies et al., 2012; Bales et al., 2010; Payane & DeMichele, 2010; Chamberlain et al., 2020; 김지선 외, 2013; 한민경·김민영, 2018;연성진·유진, 2015). 이와 더불어 시설 내 처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자를 지도·감독하던 보호관찰관이 고위험범죄자를 담당하면서 받는 긴장감, 신체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엄청난 분량의 위치정보와 경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전자감시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언론의 과신과 관심 등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Tennessee Board of Probation and Parol, 2007; 김지선 외, 2013; 연성진·유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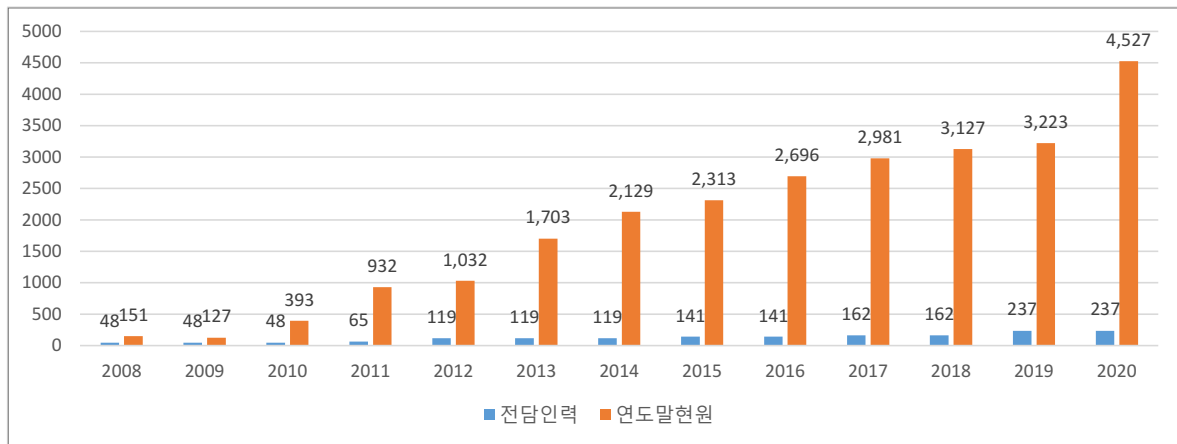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담당직원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 증가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Brown et al., 2007; Payne & Matthew, 2010; Payne and Matthew, 2011; Bishop, 2010).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전자감독이 수반되는 보호관찰은 전통적인 보호관찰에 비해 보호관찰관 1인당 적정 담당사건수를 훨씬 더 적게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이 전자감독만 전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시간(active) 위치추적 전자감독을 채택하는 경우 업무량이 더 많아져 단속적(passive) 위치추적 전자감독에 비해 담당직원 1인당 적정 담당사건수를 더 적게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시행지침에서 담당직원 1인당 적정 담당사건수를 1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감독 도입 초기를 제외하고 1인당 적정 담당사건수 기준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7차례에 걸친 인력증원을 통해 전자감독 담당직원(관제인력 포함)은 2008년 61명에서 2020년 311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그림 3] 참조) 2020년 담당직원 1인당 대상자 수는 19.1명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1:1 전자감독과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신설로 91명의 신규인력을 충원받았으나, 가석방 전자감독의 일반범죄 확대와 2021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비한 신규인력 충원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

[표 4] 전자감독 전담인력 현황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전체	61	61	61	91	145	163	163	186	186	214	219	311	311
관제인력	13	13	13	26	26	44	44	45	45	52	57	74	74
전담인력	48	48	48	65	119	119	119	141	141	162	162	237	237
전담인력 1인당 사건	3.1	2.6	8.2	14.3	8.7	14.3	17.9	16.4	19.1	18.4	19.3	13.6	19.1

[그림 3] 전자감독 대상자 및 전담직원 추이



한편, 2020년 담당직원 1인당 대상자 수 19.1명은 전국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관 규모가 작은 지소 단위의 보호관찰소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전자감독 담당직원이 일반 보호관찰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야간과 휴일 대상자 지도·감독과 경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범죄예방팀을 별도로 구성하지 못해 가까운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¹¹⁾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지역 내에 동시에 위험경보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공백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견 가능한 위험이다.

담당해야 할 대상자 수가 적정인력을 초과했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 방법은 ‘선택과 집중 원칙’이며, 선택기준은 대상자의 위험성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전처럼 처우 등급이 세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중 가장 처우 등급이 높은 대상자는 1:1 전자감독 대상자이다. 1:1 전자감독제도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들끓는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두순 3법 중의 하나로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최소 6개월

11) 범죄예방팀은 현재 54개 기관에 58개 팀이 설치되어 있고, 18개 기관은 인접한 2개 기관이 공조하여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 원칙적으로는 한 명이 담당직원이 1명의 대상자만을 밀착·집중감독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처럼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을 추적한다는 전자감시의 내용은 같으나, 집중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담당직원의 지도감독과 개별심리치료 및 사회복지지원 등 인적 요소를 강화한 방식이다.¹²⁾

1:1 전자감독 대상자 다음으로 담당자의 지도감독이 집중되는 대상자는 형기종료 대상자이다. 담당직원이 지켜야 할 대면 및 통신지도, 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의 횟수가 더 많고, 제 15조 제2항에 규정된 개별심리치료나 각종 원호도 집중적으로 받는 대상이다. 분류등급체계가 단순화되면서 현재 형기종료 대상자와 특정범죄 가석방 대상자는 같은 등급에 속해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기종료 전자감독을 포함하여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 중 특정범죄 가석방 대상자는 담당직원이 가장 지도감독 순응도가 높고, 친범죄성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일반범죄 가석방 대상자는 가장 낮은 등급의 대상자로 분류되며, 일반범죄 가석방 대상자 중 부착 기간이 60일 미만의 대상자에게는 담당직원이 지켜야 할 지도감독 기준(대면접촉 횟수 및 이동경로 분석 등)이 가장 완화된 상태로 적용된다.

그러나 고위험범죄자로 구성된 전자감독 대상자 집단 중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단일 뿐이고, 일반 보호관찰에서 가석방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집단이며, 가장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해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은 담당직원이 모든 대상자에게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일부는 전자장치에 의한 기술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

IV

가석방 전자감독의 기대효과와 실현가능성

1. 과밀수용 해소

2020년 2월 법 개정 이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

12)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를 심층 연구한 박미량(2020)은 제도의 명칭을 1:1 전자감독에서 1:1 보호관찰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상자의 재범억제와 이를 통한 국민과 사회의 안전보장이 전자감독제도의 시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과 이후 교도소 과밀수용에 의한 국가배상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이 뒤따르면서 교도소 과밀수용이 교정 분야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후문전략(back-door strategy)의 하나로 가석방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재택감독부 조건부 가석방제도 도입 의사를 발표하면서 가석방제도의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종적으로 2020년 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나타났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에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을 특정범죄 이외의 가석방의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를 개정 취지로 밝히고 있다(김혜정, 2020).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에 재범억제 이외에 ‘과밀수용 해소’라는 기대효과가 추가된 것이다.

현재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이 기결수형자보다는 미결수용자의 더 빠른 증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확대만으로는 과밀수용 해소에 한계가 있다¹³⁾¹⁴⁾는 점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현재의 가석방 운영방식이 고수되는 한 과밀수용 해소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입법자는 가석방 확대에 의한 국민의 불안감 증가를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가석방자의 절대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고, 가석방 출소율도 마찬가지다. [표 5]의 왼쪽 두 번째 열의 가석방 허가자 수를 보면, 가석방자가 2016년에 전년도와 비교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2010년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2017년 8천건대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3년 연속 8천건 대에서 증감하고 있다. 가석방 출소율도 2015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아직 200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음에도, 이처럼 가석방자의 절대 수치와 가석방 출소율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13) 2010년 미결수용자는 14,819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9,343명으로 2010년 대비 30.5%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미결수용인원이 가장 높았던 2016년의 미결수용자 인원은 2010년 대비 40.9%나 증가하였다. 반면, 2010년 기결수형자는 30,607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33,813명으로 2010년 대비 10.5%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2017년의 기결수형자 인원은 2010년 대비 15.6% 증가하여, 미결수용자 증가 비율에 비해 훨씬 더 낮다(이영희, 2020).

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는 활용도가 매우 낮고, 수사단계의 구속사건은 집행 기간이 너무 짧아 재판단계에서 구속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80%~90% 정도의 형을 집행한 때에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를 보면, 과거와 비교해볼 때, 90% 이상의 형을 집행한 수형자의 비율이 줄었고, 70% 이상~80% 미만의 형을 집행한 수형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가석방 허가자가 80% 이상~90% 미만의 형이 집행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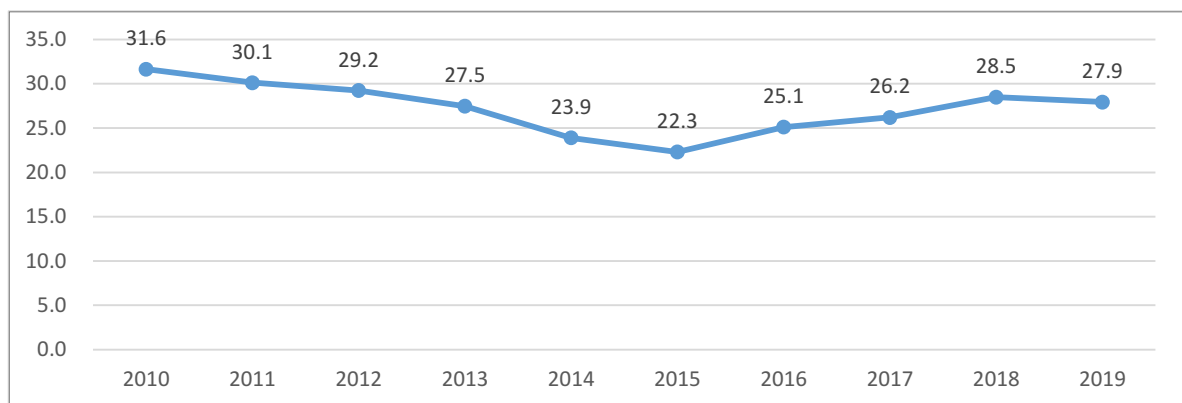
[표 5]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2010년~2019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합계	60%미만	70%미만	80%미만	90%미만	90%이상
2010		7,995(100)	-	1(0.0)	908(11.4)	5,117(64.0)	1,969(24.6)
2011		7,065(100)	-	3(0.0)	759(10.7)	4,654(65.9)	1,649(23.3)
2012		6,444(100)	1(0.0)	-	548(8.5)	3,953(61.3)	1,942(30.1)
2013		6,148(100)	-	1(0.0)	469(7.6)	3,786(61.6)	1,892(30.8)
2014		5,361(100)	-	1(0.0)	432(8.1)	3,197(59.6)	1,731(32.3)
2015		5,480(100)	-	2(0.0)	291(5.3)	3,075(56.1)	2,112(38.5)
2016		7,126(100)	-	5(0.1)	926(13.0)	3,849(54.0)	2,346(32.9)
2017		8,247(100)	-	18(0.2)	1,493(18.1)	4,795(58.1)	1,941(23.5)
2018		8,667(100)	50(0.6)	67(0.8)	1,496(17.3)	4,976(57.4)	2,078(24.0)
2019		8,139(100)	3(0.0)	74(0.9)	1,630(20.0)	4,380(53.8)	2,052(25.2)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2020), 169.

[그림 4] 가석방 출소율 추이(2010년-2019년)



자료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2020), 170쪽 재가공.

가석방 출소율 : (형기종료 석방+가석방) / 가석방 *100

2020년 8월부터 가석방 전자감독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가석방자가 증가했는지는 관련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기간 분포를 분석해보면, 가석방 허가의 중요 변수인 형집행률 기준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는 있다.

[표 6]을 보면, 2020년 1,525명의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2019년 부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가 5.1%(42명)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1,137명 47.7%(1,137명)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형 집행률이 90%에 임박하였을 때 가석방이 허가된 후 그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내렸거나 처음부터 형기 자체가 짧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에게 가석방이 허가된 후 전자감독 부착 명령을 내린 결과일 것이다. 전자인 경우라면 과밀수용 해소라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후자라면 처음부터 전자장치 부착 필요가 없는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게 가석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감독을 부과한 것이므로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가 통제망 확대(net widening)를 결과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6] 전체 전자감독 접수사건의 부착기간별 현황 (2019~2020년)

연도	3월미만	3월 이상	6월 이상	1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
		6월 미만	1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2019	42(5.1)	93(11.2)	138(16.6)	219(26.4)	133(16)	181(21.8)	24(2.9)	830(100)
2020	1,137(47.7)	422(17.7)	218(9.1)	218(9.1)	107(4.5)	247(10.4)	34(1.4)	2,383(100)

자료 : 법무부 전자감독과 내부자료(2021).

한편, 2020년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인 1,525명이 이전 해의 가석방 허가자와 비교해 증가한 수치라고 해도 가석방 허가자는 18.7%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효과로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의 효과가 작용했을 뿐이고 이후에도 가석방제도를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한다면,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통제망 확대라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2.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전자장치부착법은 처음 제정 시부터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범죄에 대한 가석방 전자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제22조 제2항에서 대상을 달리할 뿐 그 목적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앞서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형기종료 전

자감독 대상자와 달리 보호관찰법 제32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모든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표 7]의 일반준수사항이 부과되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 7] 하단에 제시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중 일반준수사항의 국외 출국 시 신고 여부와 특별준수사항 중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거주지 제한은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는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관제센터에서는 일차적 경보처리를 통하여 중요한 경보인 경우이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를 관리하는 담당직원에게 연락하여 경보에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표 7]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

유형	내용	전자적 감시 가능여부
일반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특별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에 따라 형기종료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과 동일

△ 2018년 해외 무단출국 탐지기능 도입으로 해외에 나갈 때 보호관찰소에 신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준수사항 부과와 이에 대한 이행 여부의 감독은 보호관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준수사항은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기제를 활용한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범죄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책임감을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이때 전자감시기술은 보호관찰관의 한계를 넘어서 24시간 지속적인 감독하에 범죄자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Botts, 2007). 입법 취지의 설명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규정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가석방자의 사회복귀에 있어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관리가 갖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현황을 분석해보면, 실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모든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대상자의 범행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전자장치를 통해서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의 부과율이 높지 않다. [표 8]은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처분유형별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특별준수사항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로, 55.2%가 특별준수사항을 하나도 부과받지 않았다. 이에 비해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 22.5%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1/2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가종료·가출소 전자감독 대상자는 31.9%, 집행유예 전자감독 대상자는 37.0%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보다 10%p 정도 차이가 난다.

[표 8]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부과 갯수

준수사항 부과 여부 및 갯수	처분유형				계
	가석방	형기종료	가종료등	집행유예	
부과받지 않음	1800(55.2)	603(22.5)	105(31.9)	57(37.0)	2565(39.9)
1개	629(19.3)	843(31.4)	78(23.7)	49(31.8)	1599(24.9)
2개	564(17.3)	728(27.1)	61(18.5)	25(16.2)	1378(21.4)
3개	222(6.8)	349(13.0)	44(13.4)	12(7.8)	627(9.8)
4개	41(1.3)	138(5.1)	24(7.3)	8(5.2)	211(3.3)
5개 이상	3(0.1)	22(0.8)	17(5.2)	3(1.9)	45(0.7)
계	3259(100.0)	2683(100.0)	329(100.0)	154(100.0)	6425(100.0)

한편, 경보와 연계되어 준수사항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쉽고,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4가지 유형의 특별준수사항 부과율을 정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중 외출금지가 부과된 비율은 7.1%, 출입금지와 주거지 제한은 각각 0.3%,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1.7%로 매우 낮았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외출금지 부과율이 집행유예 전자감독 대상자와 비교해 약간 높고, 주거지 제한 부과율이 가종료·가출소 전자감독 대상자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보와 연계된 모든 특별준수 사항 부과율이 다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표 9] 특별준수사항 유형별 부과율

준수사항 유형	부과 여부	처분유형				계
		가석방	형기종료	가종료등	집행유예	
외출금지	미부과	3027(92.9)	2018(75.2)	242(73.6)	144(93.5)	5431(84.5)
	부과	232(7.1)	665(24.8)	87(26.4)	10(6.5)	994(15.5)
출입금지	미부과	3249(99.7)	2236(83.3)	264(80.2)	119(77.3)	5868(91.3)
	부과	10(0.3)	447(16.7)	65(19.8)	35(22.7)	557(8.7)
주거지제한	미부과	3249(99.7)	2478(92.4)	328(99.7)	152(98.7)	6207(96.6)
	부과	10(0.3)	205(7.6)	1(0.3)	2(1.3)	218(3.4)
접근금지	미부과	3205(98.3)	1812(67.5)	293(89.1)	116(75.3)	5426(84.5)
	부과	54(1.7)	871(32.5)	36(10.9)	38(24.7)	999(15.5)

이처럼 고위험범죄군으로 분류되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의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일반사범이며 부착 기간도 3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이 더 많이 부과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래 법의 목적대로 전자장치를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달성하기 어렵다. 대다수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장치가 24시간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거나 담당 직원의 충실한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3. 가석방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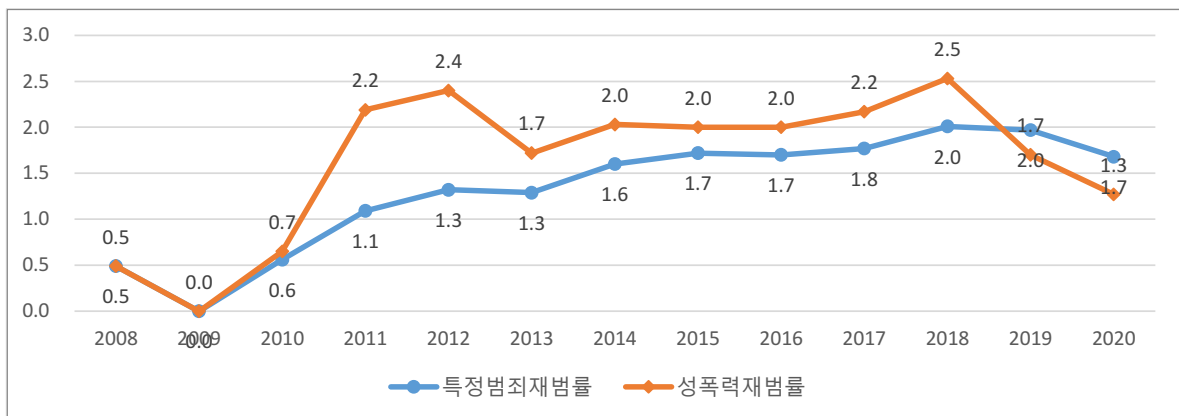
일반범죄로 전자감독 가석방의 확대한 기대효과로는 과밀수용 해소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으나, 재범억제효과는 모든 처분이나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이며, 재범억제효과는 전자감독제도 확대의 중요한 논리였다. 아래에서는 가석방 전자감독의 재범억제효과가 검증된 사실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반범죄로 확대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사회 내 처분의 하나이며, 사회 내 처분 대상자의 재범률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하나는 사회 내 처우 기간 중 재범률이고, 다른 하나는 처우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재범률이다. 두 가지 재범률 지표는 나름의 유용성이 있으나, 집행된 처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측정치는 후자라고 판단된다(김지선 외, 2015).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기간 종료 이후 재범률에 대한 통계가 없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무부는 전자감독이 종료된 대상자에 대해서 처분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관련 작업이 수행된 적이 없다.

현재 법무부에서 공표하는 관련 통계는 [그림 5]에 제시한 특정범죄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률이다. 이 통계는 법무부에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통계이고, 언론 보도나 연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다. [그림 5]에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이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형기 종료 전자감독 대상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성폭력 대상자의 재범률이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은 전체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보다 더 낮다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 5] 전자감독 대상자의 기간 중 재범률



그러나 [그림 5]의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률은 전반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과소평가할 소지, 역으로 전자감독의 재범억제 효과를 과대평가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는 첫째, 보호관찰 분야에서 공표하는 재범률에서 재범을 산정할 때 검사가 구공판 기소한 경우만 포함하므로 구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된다(김지선 외, 2015). 이는 특정 처분의 효과를 알아보기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가(re-offending)를 파

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너무 제한적인 재범률 산정기준이다.¹⁵⁾ 둘째, 재범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수가 당해연도 실시사건이다. 당해연도 실시 사건은 그해 접수된 신수사건 이외에도 부착 기간이 길어 집행이 계속되는 사건이나 집행이 기간이 짧아 그 해에 잠깐 전자감독이 집행된 사건이 모두 포함되므로 모수가 커지고, 이에 따라 재범률은 낮게 나타나게 된다. 2020년처럼 부착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짧은 일반범죄 가석방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자의 이유로 재범률은 지금보다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전자감독이 개시된 대상자 자료를 활용하여,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된 재범률도 법무부에서 구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한 사건만 재범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률이다. 그러나 실시사건을 모수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 전자감독이 개시된 사람 중 집행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므로 재범률이 과소추정되는 문제는 다소 해결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표 10] 가석방 전자감독대상자 대상자의 재범률 (2008년~2016년)

전자감독 집행시작연도	처분유형				계
	가석방	형기종료	가종료·가출소	집행유예	
2008	2.7	-	0.0	0.0	2.7
2009	2.4	0.0	16.7	0.0	2.9
2010	2.3	44.1	23.1	18.5	14.3
2011	2.3	32.9	25.0	29.5	15.9
2012	3.4	35.0	16.0	18.8	15.5
2013	2.6	30.1	29.2	21.4	21.9
2014	2.0	31.2	16.3	21.1	19.6
2015	.5	20.5	11.7	25.0	10.5
2016	.5	10.9	9.6	33.3	5.5
전체	1.9	27.1	14.3	22.7	13.5

자료: 법무부 전자감독과 내부자료(2018)

[표 10]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가석방 전자감독이 집행 중이었던 대상자 3,141명 중 59명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은 1.9%였다. 전자감독 집행 시

15) 이외에도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보호관찰 담당자에 대한 폭행,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자장치 훼손 및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이 재범률에 반영되지 않는데, 외국의 재범률 연구에서 이를 포함시킬 것인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작 연도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8년에는 2.7%였고, 이후 낮아지다가 2012년에는 3.4%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낮아져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0.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은 형기종료, 가중료·가출소, 집행유예 전자감독 대상자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낮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부착 기간이 평균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과소추정할 위험이 크다. 재범연구에서 추적 기간이 짧으면 재범율이 낮아지고, 추적 기간이 길어지면 재범율이 높아지는 효과와 비슷하게 부착 기간이 짧아 단기간 머무르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가 짧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기간 중 재범 없이 전자감독을 종료한 후에 재범을 했더라도 기간 중 재범률에는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부착 기간이 10배 정도 높은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집행기간이 길어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가 길다. 예를 들어, 가석방과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똑같이 전자장치 부착개시 후 2년이 지난 후 재범을 했더라도,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자로 산정되지 않는 반면에, 형기종료 전자감독 대상자는 재범자로 산정된다. 따라서 집행기간이 짧은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공적인 처분 완료 여부가 재범효과의 지표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통계를 통해 가석방 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해서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것 즉,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전자감독의 인과적 효과가 있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다. 비교집단이 없어, 가석방 대상자의 낮은 재범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이 원래 낮으므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전자감독이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춘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가석방 전자감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범률 통계가 제시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석방 전자감독의 효과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자감독을 고위험범죄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16) 가석방자와 관련된 재범률 통계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공표하는 가석방자의 '재입소율'이 있다. 이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3년 이내 다시 교도소에 입소한 비율을 집계한 것으로 기간 종료 후, 그것도 기간 종료 3년 후로 비교적 장기의 재범률 통계치로 평균 부착 기간이 10개월인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감독 기간 내 재범률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V

결론

2020년 2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되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일반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결구금과 가석방 확대를 통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감독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집행유예를 포함해 다양한 단계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위험 수준 및 위험 특성이 다른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는 보안처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간 법원에서 집행유예단계의 전자감독은 거의 선고하지 않았고, 범죄의 중대성이 큰 이견이 없는 범죄유형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의 확대는 전자감독을 활용하는 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범죄자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자감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일반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일반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을 확대하는 정책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 두 번째의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된다.

전자감독의 효과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사회 내 처분에 전자감독을 추가하는 방

식으로는 재범억제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통제망 확대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보여준다(Botts, 2007; Belur et al., 2020). 이에 비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교도소 수용을 대신해 집행 기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자감독으로 대체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구금방식의 전자감독을 도입하고 있다. 재택구금 전자감독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부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나 학업 등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이후 대상자의 변화 정도에 맞추어 자유시간을 확대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개입 없이 대부분의 외출제한이나 재택구금 전자감독을 단독으로 부과하는 영국과는 달리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재택구금방식의 전자감독은 재범억제효과에 효과적이며, 더 나아가 이후 이들 대상자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oone et al., 2017; Andersen, et al, 2014; Schwedler et al., 2017)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범죄 가석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재택구금 전자감독방식의 효과는 우리와 사회적 맥락과 전반적인 교정보호 정책의 풍토가 다른 유럽국가에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몇몇 지역을 단위로 한 시범프로그램을 가동한 후 그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법무부, 2020,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기획과.
- 강동범·이강민, 2017,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교정학회 소식」27권 2호, 교정학회.
- 김지선·안성훈·박성훈·원혜욱·윤옥경·노성훈, 2015,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 김지선·장다혜·김정명·김성언·한영수·강호성·문화갑, 2013,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2020,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의미에 대한 고찰”, 「보호관찰」20(1): 1-30.
- 박미량, 2020, 일대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법무부.
- 박정일, 2020, 사회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방안-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 박정일, 2021,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보안처분의 법치국가적 조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찬걸, 2019,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19(1): 53-111.
- 법무부, 2021, 「2021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
- 연성진·유진, 2015, 「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희정,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회 소식」31권 1호, 교정학회.
- 한민경·김민영, 2018, 「전자감독 전담직원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한영수·강호성·이형섭, 2013, 「한국전자감독제도는: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
-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외국문헌

- Andersen, L. H., & Andersen, S. H. 2014. Effect of Electronic Monitoring on Social Welfare Dependence. *Criminology & Public Policy*, 13(3). 349-379.
- Andrews, D.A., Bonta, J., & Hoge, R.D. (1990).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ur*, 17, 19-52.
- Bales, W., Mann, K., Blomberg, T., Gales, G., Barrick, K., Dhungana, K., & McManus, B. 2010.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Retrieved from <http://www.criminologycenter.fsu.edu/>
- Belur, J., Thornton, A., Tompsson, L., Manning, M., & Sidebottom, A. 2020.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8, 1-18.
- Bishop, L. 2010. The Challenges of GPS and Sex Offender Management. *Federal Probation*, 74(2), 33-35.
- Boone, M., van der Kooij, M., & Rap, S. 2017. The highly reintegrative approach of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9(1), 46-61.
- Bottos, S. 2007. An overview of electronic monitoring in correction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Retrieved from <http://www.csc-scc.gc.ca/>
- Brown, T. M., McCabe, S. A., & Wellford, C. F. 2007.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 technology for community supervision: Lessons learned (No. 219376). Noblis.
- Chamberlain, A. W., Smith, S. M. and Turner, S. F., 2020, Global positioning system monitoring of sex offenders : Implementation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Vol. 31, Issue 9.
- Gies, S. Gainey, R. Cohen, M. I., Healy, E. Duplantier, D., Bekelman, A.& Hopps, M. (2012). Monitoring high-risk sex offenders with GPS technology: An evaluation of the California supervision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ncjrs.gov/>
- Hucklesby, A. 2009. Understanding Offender's Compliance: A Case Study of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 Orders. *Journal of Law and Society*, 36(2): 248-271.
- Payne, B., & DiMichele, M. 2010. Electronic Supervision for Sex Offenders: Implications for Work Load, Supervision Goals, Versatility and Policymak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 276-281.
- Payne, B., & DiMichele, M. 2011. Sex Offender Policies: Considering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GPS Sex Offender Monitor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177-187. Retrieved from www.sccjr.ac.uk
- Schwedler, A., & Woessner, G. 2017. Identifying the Rehabilitative Potential of Electronically Monitored Release Prepar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1(8), 839-856.
- Tennessee Board of Pardon and Parole. 2007. Monitoring Tennessee's sex offenders using global positioning systems: A project evaluation. Retrieved from <http://state.tn.us/bopp/Press%20Releases/BOPP%20GPS%20Program%20Evaluation,%20April%202007.pdf> 120
- Turner, S. & Jannetta, J., 2007.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 (HRSO) GPS Pilot Program. UCI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Working Paper.

2021년 제60회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록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1. 학회의 회장, 기타 임원 및 회원은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과 학회 활동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공익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임의로 표절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하여야 하고 한국교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회는 회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세부규정”을 제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에 있어 오로지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서 연구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 및 기타 논문심사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연구윤리현장을 실제 연구 활동과 대외 활동에서 구현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임원,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아래와 같다.
 - (1)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따온 글이나 단어, 아이디어 등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옮긴 경우
 - (2) 인용하고 출처를 밝혔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경우

- (3) 출처를 제시하였지만 인용부호 없이 다른 저술의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4. “이중게재”라 함은 자신이 쓴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법학 및 사회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이사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실무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회의 간사가 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절차

제10조(심사 배제) 논문의 심사자가 논문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할 경우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 또는 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또는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4조(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 ③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인사는 조사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20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후조치

제21조(한국연구재단 보고)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다.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단순한 실수로 위의 표절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주의서한을 발송하여 경고 조치한다.
2. 게재논문을 학회학술지 『교정연구』에서 삭제한다.
3. 논문투고자를 향후 3년 동안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표절 등의 예방을 조치) 표절이나 논문의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는 총회·이사회·학회 학술발표회 등의 기회에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회원에게 주지하며, “학회소식지” 등에 연구윤리 구현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제25조(준용 및 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정학회의 회칙 등 학회 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하며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학회 회장단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2월 14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2월 11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11월 9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 제60회 한국교정학회·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정학회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